

2017년 04월 청렴윤리 및 공직기강확립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확립 점검 결과)

결 재	담 당	처 장
	하두연	김성현

교육구분	정 기	교육일시	2017.04.10.(10:30~11:30)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참석사유
	교육대상 인원수	16	15	1	휴가 : 김성담, 한성희.
	교육실시 인원수	16	15	1	
교육내용	<p>▣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p> <p>○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사업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대상 실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규정을 위반한 09:00 이후 출근 및 지참 회피 목적 출장 결재 신청 - 당직근무 변경명령 없이 직원 간 임의로 근무 변경 - 캐비닛 미잠금 등 보안관리 소홀 - CCTV 미작동 등 관리 소홀 - 업무용 PC 암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소홀 <p>※ 대선일정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불시 점검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p> <p>▶ 관련근거 : 청렴감찰처-736(2017.04.03.)문서참고</p>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명	교육장소	비 고	
	김상균	처장	안전조사처 사무실	*전파교육(4/11)	

2017년 4월 청렴윤리 및 공직기강확립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확립 점검 결과)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1	팀장	김정수	김정수	2	부장	김춘만	김춘만	3	차장	하수연	하수연
4	과장	신영철	신영철	5	부장	신세현	신세현	6	과장	최일규	최일규
7	선임	김민규	김민규	8	부장	김성담	김성담	9	차장	김균식	김균식
10	차장	채철영	채철영	11	차장	이계인	이계인	12	과장	한성희	한성희
13	차장	이해철	이해철	14	차장	이용우	이용우	15	과장	최영식	최영식

“내가 지킨 정보보안 신뢰받는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상시국 대비 서울시 공직기강 점검 결과 알림**

1. 서울시 감사담당관-5198(2017.03.30.)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점검 결과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사업본부,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속에서는 점검결과 공람 및 자체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서울시 및 공사 감사실에서 대선일정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불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관련문서(사본) 1부.

2. 비상시국 대비 서울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1부. 끝.



수신자 가2-6,가8-36,나1,다1,라1-2,마1-12,마13,바1-5,바6-13,사1-11,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서울메트로노동조합(서울메트로노동조합위원장)

과장 오은석 부장 강원식 청렴감찰처장 전결 04/03 이택수

협조자

시행 청렴감찰처-736(2017.04.03.)

접수 안전조사처-1208(2017.04.03.)

우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02-6110-5757 전송 02-6110-5819 / oty0526@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 복무규정을 위반한 09:00 이후 출근 및 지참 회피 목적 출장결재 신청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및 제13조(근무시간 등)의 규정에 따라 09:00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 상사의 정당한 사전승인 없이 09:00 이후 지참출근하여 관련 규정 위반
 - 출근점검시 지참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한 출장결재 신청

■ 당직근무 변경명령 없이 직원 간 임의로 근무 변경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나
 - 사전에 당직근무 변경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 임의로 합의하여 근무를 변경

■ 캐비닛 미잠금 등 보안관리 소홀

-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보관 등)에 따라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문서 등을 보관해야 하나,
 - 퇴근시 서류가 포함된 캐비닛 또는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거나 책상위 회계서류 등을 방치

■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방치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7조(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의 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의 출입보안을 강화하고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방치

■ CCTV 미작동 등 관리 소홀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47조(CCTV 시스템 보안 관리)의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함에도
- CCTV 영상이 간헐적으로 미표출 됨에도 방치

■ 업무용 PC 암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소홀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4조(PC 등 단말기 보안 관리)의 규정에 따라 CMOS 비밀번호 및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 업무용 개인 PC에 CMOS 암호 미설정